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6월 2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이 정 옥
여성가족부 장 관

● **법률 제17338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소지·운반”을 “소지·운반·광고·소개”로, “10년 이하”를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입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입을”로, “소지”를 “소지·시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8조의2”를 “제8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아동·청소년을 ‘이용’하는 음란물의 의미로 가볍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용어로 변경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성착취·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규모와 형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5호).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1조).

라. 관련 규정에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제56조제1항).

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

<법제처 제공>